

의안번호	제 80호
의결년월일	1995. 12. 21.

## 논산군놀이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(안)

### 심사보고서

1995. 12. 22.

총무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2월 9일 논산군수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12월 11일
- 다. 상정일자 : 1995년 12월 21일 제45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

#### 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김철기)

##### 가. 제안이유

###### □ 조례제안이유

- 논산군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인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군 놀이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이유임.

##### 나. 주요골자

-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 출연금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.05% 이상 0.1% 이하로 조성하고,
-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, 결산,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, 지급액 결정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별도 장학기금 계좌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였음.
- 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,
  - 인재육성을 위한 중·고생 및 대학생 장학생 선발지원
  - 군내 중·고등학교의 시설확충등 면학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이였음.
- 장학금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 지급토록 하였음.

## 第45回 - 第11次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 15조 및 133조에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기타 상위법령 및 조례 상호간에도 저촉되지 아니 하였음.
- ※ 우리도내 장학기금 운영 시군 연기군 (91. 6. 19 제정)

### 4. 질의 답변 요지

- 질의 (김성중 위원)
  - 장학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은 ?
- 답변 (내무과장 김철기)
  - 별도 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함.
- 질의 (김성중 위원)
  - 두마면지역 학생도 지급되는가 ?
- 답변 (내무과장 김철기)
  - 군내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두마면 지역도 해당됨.

### 5. 토론요지

- 없 음.

### 6. 심사결과

-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의결.